

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8. 3.(금)

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원장

김종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 (3인)

4. 불참위원 : 홍성규 부위원장 (휴가 중)

양문석 상임위원 (국외 출장 중)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1.14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- (주)우리홈쇼핑
- (2012-44(서)-178)

- o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
위원회가 명한 (주)우리홈쇼핑의 '센트리트 고당도 오렌지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
('12. 7. 31)에 대한 원심 집행정지 신청('12. 8. 1)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심 청구
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일부 집행(과징금 처분에 대한 고지방송)을
정지하기로 의결함

【 원심결정의 개요 】

▪프로그램명	롯데홈쇼핑 '센트리트 고당도 오렌지' 2012.4.9.(월), 19:35~20:35
▪제재 조치 처분명령	과징금 일천만원
▪주요 위반 내용	<p>○ 식품(센트리트 고당도 오렌지)을 소개·판매하면서, - 과즙이 많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여자 쇼호스트가 오렌지 1/2개를 손으로 짜고, 그 위에서 남자 쇼호스트가 나머지 1/2개를 손으로 짜서 그 즙을 흘려내리게 하는 내용을 방송(1회)하면서, 남자 쇼호스트가 연출한 상황이 화면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묘사하여 시청자가 오인케 할 소지가 높고 이는 허위의 방법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됨</p>
▪관련 규정	「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5조(일반원칙)제2항